

| 제 2 장 |

## 정전협상

# 정전협상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측에 의한 휴전협상 제의는 미국으로서도 바라던 바였으며 UN 또한 이를 반겼다. 우선 휴전협상에 참가할 양측 대표단의 명단과 협상에서 다룰 의제선정 문제 등을 미리 연락장교단을 통하여 조절하여 제1차 휴전협상 본회의를 우선 개성(開城)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sup>17</sup>

## A) 의정 설정문제:

휴전협상에 대한 중공측의 태도는 우선 1) UNC(유엔군)의 한반도로부터 완전 철수 2) 대만의 중국본토 반환 3) 중공의 UN의석 대치 등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오직 인내와 계속적인 군사적 압력만이 분명한 회답으로 생각되었으며 중공의 제5차 춘계공세(5월 공세)의 실패는 더 이상 중공군의 무력공세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7일 소련 외무차관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가 주 모스크바의 미 대사 알렌 커크(Allen G. Kirk)에게 “정전회담은 현지 야전사령관의 협상에 맡기고 회담은 순 군사적인면에 한 하며 정치적 문제와 영토적인 문제는 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요지를 통지해왔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리지웨이 UN군 사령관은 라디오를 통하여 “회담 장소는 원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덴마크 병원선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

17 본회장을 후에 (1951년 10월 24일) 板門店으로 옮겼다.



▲ 북측과 남측 휴전 협상 실무자들의 모습



▲ 처음 휴전협상장으로 지정된 개성 내봉장(來鳳莊) \*\*\* 뒤에 판문점으로 바뀌었음.

회담 날짜를 설정하자”라고 방송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리지웨이(Gen. Ridgway) 사령관에게 정전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지침을 훈령하였다. 이것은 정전협정의 확보와 재발 방지책,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 금지, 특히 대만 반환에 대한 언급 금지, UN에 장개석 정부의 대표를 중공의 대표로 대체하는 문제 언급 금지 등 순수한 군사적 문제 이외는 일체 토의하지 말것과, 비무장지대는 현 전투위치에서 남북 20마일로 설정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애 대해 공산측(특히 중공측)은 정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완전 철수, 대만의 중국 본토에의 반환, UN에 장개석 정부 대신 중공의 의석 대체, 휴전선 설정을 원래의 북위 38선으로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 각각 2km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양쪽의 의견 접근은 어려워 보였으나 UN군측의 강력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앞세운 군사적 압박에 결국 공산측이 요구한 a) 외국군대 철수문제 b) 대만문제 c) 중공의 안보리 의석 대체 문제 등은 제외, 순수한 군사적인 문제만을 토의한다는 원칙에 의해 의제에서 배제됐고 다음과 같은 의제 채택으로 겨우 합의하였다.

### 1. 의제 설정

### 2. 정전 경계선(Demarcation Line) 설정과 비무장지대(DMZ) 설정



▲ 유엔군측 휴전대표로 나온 터너 조이 제독(총양) (1951. 8. 13)

### 3. 정전회담 합의에 대한 실천과 조율 문제

### 4. 포로석방에 대한 토의

위의 의제 중에서 가장 시간을 끈 것이 정전 경계선 설정과 포로석방 문제였으며 특히 포로석방 문제는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지속된 것은 이 포로 문제에 근 2년 이상이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 [휴전협상 대표단 명단]

#### a) UN군측 대표단

왼쪽부터 호데스 장군(General Henry Hodes), 크레이기 장군(General Craigie), 조이 제독(Admiral Turner Joy, 수석대표), 한국측의 대표인 백선엽 장군, 버크 제독(Admiral Arleigh Burke)

#### b)공산측 대표단

왼쪽부터 중공군의 세팡(Hsieh Fang) 소장, 덩화(Teng Hua) 중장, 북한군 대표 남일(南日) 중장(수석대표), 이상조(李相朝) 소장, 장평산(張平山) 소장



▲ 공산군측 휴전회담 대표로 가운데가 북측 수석 남일 대표 (1951. 7. 16)

## B) 정전선 설정문제

이 문제는 뒤의 포로문제와 같이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서로가 자기 주장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공산측은 휴전(정전) 경계선은 당연히 원래의 38선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고, UN군측은 현재의 전투 점축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UN군측의 강력한 주장의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산측의 남침을 방위하는데 용이한 현 지점을 절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UN측이 주장한 휴전(정전)선은 소위 캔사스 전선(Kansas Line)과 와이오밍 전선(\*Wyoming Line)<sup>18</sup>으로, 특히 산악전투에 취약했던 미군으로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확보한 북상(38선 이북)의 금화(金化)-철원(鐵原)-평강(平康)으로 연결되는 소위 철의 삼각지(\*\*Iron Triangle)를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철의 삼각지는 협한 산악지대로서 적의 남침을 막는데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판치볼 등 치열한 전투를 거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지대를 확보하였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대여서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개성이 새로 설치되는 휴전(정전)선의 이북 쪽에 속하게 되는 문제였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점이었다. 이에 대해 UN군측이 중부전선의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개성을 휴전선 남쪽으로 하려 협상하였으나 공산측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대립된 양쪽 주장으로 협상이 결렬 단계까지 이르자 UN측은 보다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전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하여 이북

---

18 밴프리트(Gen. Van Fleet)장군이 설정한 방어선으로서 a) 캔서스 전선 (Kansas Line)은 서울 북방 20 마일의 임진강(臨津江) 하구에서 동북쪽으로 임진강 상류를 지나 고량포(高良浦) 까지로 이를 서부전선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와이오밍 전선 (Wyoming Line)은 고량포에서 금화(金化)-철원(鐵原) - 평강(平康)을 잇는 소위 말하는 철의 삼각지(Iron Triangle Area) 전선으로 소위 중동부 전선을 말한다.



▲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영국군들이 영국 사우샘튼항구에서 승선하고 있다(Paphotos)

의 중요 군사시설과 군비 보급로, 그리고 수도 평양을 포함한 중요한 군사 및 산업 시설 등을 맹폭격함으로써 UN군이 이 문제는 절대 양보 불가하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당시 점령한 현 전선으로 하되 휴전 직전에 이 점령 지점에서 남북이 각각 2Km씩 후퇴, 동서로 중간 4Km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C) 포로 송환문제

포로 송환문제는 그 시작부터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얹혀 있었다. 첫 째는 포로의 정의 자체부터 문제가 되었고, 송환 원칙에서 완전히 의견 대립을 보여 포로교환을 1 대 1에서 전원 대 전원(all-for-all) 원칙으로 바꾸는 듯하다가 UN군의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sup>19</sup> 주장 등으로 포로 처리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19 UN군(미군)측이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을 고집한 이유는 당시 UN군에 잡혀 있던 북한 포로들의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었고 또 중공군포로의 대부분이 장개석(張介石) 휘하의 전 국부군(國府軍)으로서 이들은 중국본토의 공산족에 돌아가기를 결사 반대하였다. 남한출신의 북송반대 포로들을 반공포로, 북송을 원하는 포로들을 친공포로로 불렀으며 포로수용소내에서 이 두파간의 치열한 반목은 상호 많은 사상자를 냈었고 만일 포로송환시 이들 친공포로들과 반공포로들을 다같이 돌려보낼 경우, 반공포로들이 돌아가 심한 보복적 처벌을 받을것을 염려하여 인도적인면에서 Voluntary Repatriation을 고집한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다음은 송환된 포로가 다시 적국의 병력증강에 이어질 우려에서 온 것이었다.

## [각국의 포로처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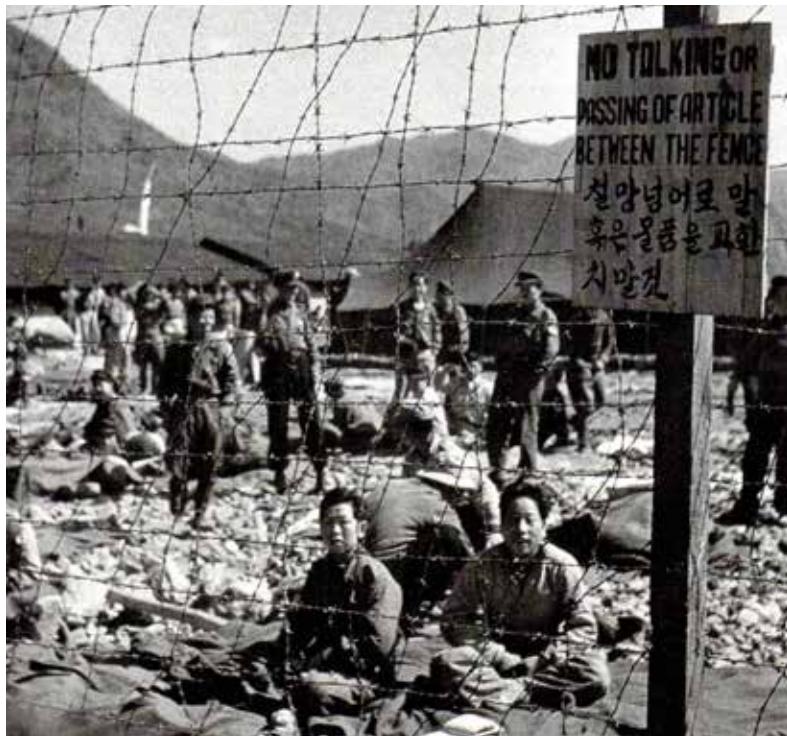
우선 미국독립전쟁(1775–1783)의 파리조약에서 포로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서로 “양쪽의 포로들은 자유의 몸이다”라고만 되어있어 많은 포로들이 종전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 대륙에 그대로 남아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로들의 송환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도 않았다.

그 뒤 소련은 2차대전이 끝나자 유럽과 극동에서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그들을 전쟁파괴 복구작업과 시베리아 개척사업에 투입하며 많은 포로들을 오랫동안 혹사하였다.

이러한 포로들의 여러가지 취급 방법 등에 대해 1929년에 만들어져 1949년 개정된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 서문 118항은 “포로들은 적대행위가 끝난 조속한 시일내에 본국으로 송환되어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포로들 중에 본국 송환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국 송환후 또 다시 군에 재입대되는 것을 꺼려 송환을 반대하는 자, 전시 중 적에게 협력 또는 부화 혹은 내통한 혐의 또는 전투력이 있었는데도 자진 투항하여 포로가 된 전력등으로 본국에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송환을 기피하는 자, 또는 전투 중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약간의 훈련을 받은 후 적군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최전선에서 전투하다 또 다시 아군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송환으로 송환되면 다시는 고향(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 등으로, 이러한 자들은 송환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개인적인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 인도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획일적인 강제송환 문제 등 많은 인도적 문제와 철학적인 문제 등이 내포되어 더 복잡하였다. 거기에다 포로송환이 적의 병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 가능한 적게 포로들을 송환하려는 양측의 속셈까지 깔려있어 문제는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 (실제로 공산측은 많은 국군포로들을 재교육시켜 자국군에 강제 입대시키고 또다시 최전방에 실전 배치하였다) 제네바협정의 118항에 명시되어있는 포로 전원의 즉시 송환문제는 실현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 따뜻한 봄볕을 즐기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공군 포로 (1953. 3. 20)

여기에서 포로의 숫자와 포로의 정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뒤엉켜 포로 송환问题是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 a) 포로의 정의(定義) 문제:

포로들 중에는 많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군과 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의용군(義勇軍)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끌고가 인민군에 입대시켰는데 이 자들이 UN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이들을 정규군과 같이 인정하여 일반 전쟁포로로 분류해야하는지도 문제였다.

둘째로 초전에서 많은 한국군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강제로 인민정규군에 편입, 최전방에 배치돼 전투 중 또 다시 UN군의 포로가



▲ 차도를 따라 남으로 피란 중인 아낙네 (1950. 7.)

되면서 법적으로는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쪽의 포로로 정의하느냐 등 법적인 문제까지 겹쳐 매우 복잡하였다.

#### b) 포로 숫자 문제(Roster):

포로의 숫자는 양쪽에서 회담 때마다 제출한 서류상의 숫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산측이 제출한 51년 12월 18일자의 숫자에는 한국군 포로 7,142명, 한국군을 제외한 UN군 4,417명 도합 11,559명<sup>20</sup> 으로 되어있었다. 이는 UN군측의 전 실종자(MIA) 188,000명<sup>21</sup>(Hermes 는 UN군 전체 실종자가 아니고 단지 국군 88,000명, 미군 11,500명만 언급)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였고, 특히 UN군측이 52년 1월 28일자에 제출한 UN군측 보유 공산군 포로 132,080명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다. 참고로 UN군측이 공산측에 제시한 보유 포로의 내용은 전원 132,080명<sup>22</sup>, 이 중 20,720명은 중공군, 121,360명은 북한인민군으로 분류된 숫자였다. \*\*\*\*(필자의 전투 경험에 의하면 전사자, 부상자를 제외한 실종자수의 대부분이 포로가된 자들이었다).

20 Hermes (1992), P.141

21 Hermes (1992), P.141

22 Hermes (1992), P.141

공산측이 제출한 숫자는 인민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20일 뒤 평양 방송에서 “서울지구 전투에서 65,000 여명의 고로군을 생포하였다”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라 UN군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말도 안되는 숫자에 대해 인민군측 이상조(李相朝) 부수석은 “포로들 중 대부분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전원 다 풀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UN군에 대해 그 제시한 숫자 중에 44,259명과 또 1,459명의 명단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N군 대표단의 루트벤 리비 제독(Rear Admiral R.E. Libby, USN)은 이 빠진 숫자들은 37,000명이 전부 남한에 살던 민간인이었으며 또 다른 1,600명이 민간인으로 판명되어 석방했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국군포로들 중 많은 수를 재교육 후에 북한 인민군에 편입시켜 최전선에 배치했고 또 그들이 다시 UN군측의 포로<sup>23</sup>가 되어 거제도와 부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있는 사실로 보아 UN측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들 인민군에 강제 편입시킨 국군포로는 포로숫자에 넣지 않은 것이 확실하였다.

이처럼 포로문제로 옥신각신 시간을 보내는 휴전협상이 침체상태에 빠지자 UN군측은 전 공군력을 동원, 북한의 군사시설 및 보급로를 연일 맹타 차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욱 더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다.

### c) 포로의 송환 원칙(송환 대상자)

이러한 회담의 교착 상태에서 우선 중,부상병(重負傷兵)의 교환이라도 먼저 하기로 합의, 1952년 4월 26일 공산측에서 684명, UN군측에서 6,670명의 부상자를 송환함으로써 처음으로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다.<sup>24</sup>

---

23 Dr. Hermes, “The US Army in Korean War” P.136 & Archives, Armistice Talks in Korea (1951–1953)(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s) Translated in English P.85

24 Archives, Armistice Talks in Korea (1951–1953) (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s) Translated in English P.85



▲ 군우리(현재 개천) 지구에서 반격을 전개하는 중공군 (1950. 11.)

포로의 송환은 제네바협정서 118항(1949, Geneva Convention Article 118)에 상호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자체 없이 전원을 원래의 소속국으로 송환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그러나 UN군측은 공산 포로들 중에 중공군외의 북한 인민군 중에는 일부 포로들이 남한 출신이고 또 한국 국군들이었으며 이들이 공산측의 포로가 되자 강제적으로 인민군으로 편입된 자들이었음을<sup>25</sup> 알게 되었다.

포로송환 문제로 휴전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한출신 포로들은 당연히 북한으로의 송환을 결사반대 하게되어, 포로수용소 내에서 북송을

---

25 Dr. Hermes “US Army in Korean War” P.142

원하는 북한 출신의 인민군 포로들과 북송을 반대하는 남한 출신의 포로들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져 서로가 죽이고 죽는 유혈사태가 연일 벌어졌다.

전자의 북한 송환 거부자를 ‘반공파’로, 후자를 ‘친공파’로 불렀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중공군 포로들 중에서 많은 수가 장개석 휘하의 국부군 출신으로, 이들 또한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UN군의 포로가 된 자들 중 공산 치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강제로 북송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서 인도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만 송환”(Voluntary Repatriation) 원칙을 지키도록 리지웨이 장군에게 지시했다.”

휴전협상에서 UN군측은 원하는 자만 돌려보내는 Voluntary Repatriation 원칙을 고수했고 공산측은 제네바협정 제 1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전원 대 전원 송환’(all-for-all repatriation)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정전협상에서 연일 언쟁이 벌어져 이것이 약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결국 “원하는 자만 돌려보내자”는 UN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송환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제3국인 “한국전 휴전감시의원국에 3개월간 맡겨 그 동안 마음이 변해 본국 송환을 원하면 송환하기로, 그 기간이 지나도 역시 송환을 거부하는 자는 송환시키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일단 포로 송환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이는 제네바협정 118조의 전원 송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면 왜 UN군측은 “원하는 자만 돌려보낸다”는 Voluntary Repatriation 원칙을 고집했는가?

**I) 인도적 측면:** UN군측에 잡혀있는 공산군 포로들 중에는 남한출신 포로들과 또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포로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원래 남한의 군인으로서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인민군에 편입되어 전투 중 UN군이나 국군에게 다시 포로가 된 자들이었다.



▲ 평양에서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조선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 (1953. 7. 27)

이들은 고향이 대부분 남한이었고 인민군에 편입된 것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어떻게든 남한에 남아있고 싶어했다. 또한 중공군 포로들 중 많은 수가 장개석의 국부군 출신으로서 이들 또한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로써 수용소 안에서는 송환 반대자와 송환을 원하는자 두 파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여기에서 만일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도 다 같이 공산측에 송환할 경우 그들이 송환 후 아주 가혹한 보복제재를 받게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반공포로들을 친공포로들과 같이 송환한다는 것은 사지로 몰아 넣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2) 군사적 측면:** 반공포로까지 전원 송환할 경우 송환된 자들이 다시 재입대되어 상대편의 병력 증강에 도움을 주게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따라서 반공포로라도 송환하지 않으면 그만큼 병력 증강을 못하게 되

어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자만 보낸다”는 Voluntary Repatriation은 오히려 적에게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다. 미군측 일부에서도 미군 포로들이 돌아오려 해도 적이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을 붙여 억류할 위험이 있고 또한 이는 제네바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미국 방부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염려는 결국 현실화되어 북한이 약 8만명에 가까운 그 많은 한국군 포로들을 “그들이 송환을 원치 않는다”라는 구실로 억류하는데 이용되었다.

실제로 거제도와 부산 등 UN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170,000명의 포로 중 중공군(의용군) 약 30,000명을 제외한 140,000명의 인민군 포로 가운데 많은 수가 남한 출신이었다.

또한 중공군 30,000명 중 10,000명은 중국 본토송환을 절대 거부, 대만으로 송환해 주기를 원했다. 이들이 거의 다 장개석 휘하의 국부군 출신이었음을 말할 나위 없다.

한편 이처럼 많은 국군포로를 억류한 데 대해 공산권측에서도 우려하는 자도 있었다. 구 소련 봉괴후 소련 외교문서 보관소(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s)에서 나온 서류들에 의하면 당시 북한 주재 S.P. 수즈달레브(S.P. Suzdalev) 대사는 “이렇게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어떻게 처리 하려는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송환 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26</sup>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항복하자 소련은 독일군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전부 폴란드에 집결시켰다가 나중에 전시에 파괴된 도로를 비롯하여 모든 시설을 복구하는 데 투입시켰던 전력이 있다.

---

26 Russian Archives(Volokhova ,2002) “Armistice Talks, P.85